자전거

장기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 (서울캠퍼스)

신고

스마트상황실 내 49번(자전거 등 방치) 민원 신고 가능하다.

관리 지침

본 지침은 서울캠퍼스 관리처 관재팀에서 2022년 4월 공포되어 5월부터 적용되는 지침이다.

- 1. 목적
 - 교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깨끗한 캠퍼스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2. 정의
 - 무단방치 자전거는 교내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되어 내부구성원의 이용과 편의를 방해하는 자전거로 구분한다.
- 3.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
 - 교내 자전거 이용자는 교내 모든 도로, 인도, 자전거 주차장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캠퍼스 이용자의 통행 및 자전거 사용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.
- 4.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
 - 관재팀은 무단방치 안내스티커 부착을 통해 무단방치 자전거 임을 사전고지해야한다.
 - 안내문 부착일로부터 14일 이상 경과된 자전거는 관재팀에 의해 견인보관소로 이동보관한다.
 - 견인보관소에서 30일간 보관하며, 보관기간 중 자전거 소유주가 나타날 경우 반환 절차를 통해 찾아갈 수 있다.
 - 견인보관소에서 30일 이상 보관된 자전거는 매각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.

5. 반환

- 견인보관소에서 보관중인 자전거를 자전거 소유주에게 반환하기 위해서는 종합상황실로 사전연락해 야한다.
- 자전거 소유주는 반환요청 시 이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. 가. 신분증 / 나. 자전거 보관장소 · 일시 / 다. 자전거의 색상 · 모양 및 제조회사명
- 소유주는 자전거 이상여부 확인 후 종합상황실로 반환신청서를 제출한다.

6. 매각

- 견인보관소 이동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후에도 자전거 소유주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매각처분할 수 있다.
- 자전거는 수의계약()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,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중인 매각대금은 한양대학교 금고에 귀속한다.

7. 관련 근거

-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0조 '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'
-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'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'